# 강제북송탈북자들의 성별에 따른 고문경험정도의 차이

변주나1)

# Gender Differences of Torture Experiences amo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rcefully Repatriated by China

Juna Byun<sup>1)</sup>

요 약

본 연구는 중국으로부터 강제북송탈북자들의 성별에 따른 고문경험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한 강제북송탈북자 96명(여성 67명, 남성 29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고문실태조사서인 이스탄불 프로코콜(1999)을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WIN 21.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송경험은 평균 2.45(±1.04)회, 1차 탈북사유는 정치적 이유 49.1%, 2차 탈북사유는 정치적 이유 90.6%, 고문경험 100%, 고문 후유증 100%, 고문후유증치료소원 100%이었다. 또한 100%에서 재북 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었다. 강제북송탈북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유의한 차이로 체포(t=-2.976, p<0.05) 1.79배, 심문(t=-2.202, p<0.05) 6.78배, 고문(t=-10.237 p<0.001) 14.31배, 고문후유증(t=-5.031, p<0.001), 4.51배, 구금(t=-3.993, p<0.01) 2.47배, 공개처형묵격 (t=-2.755, p<0.05) 1.75배, 강제노동(t=-3.770, p<0.01) 1.68배 더 경험하였다. 성고문으로는 질에 손 넣어 낙태시키기 및 중국화 꺼내기, 항문에 손 넣어 중국화 꺼내기, 임신부 배 걷어차 낙태시키기, 중국 혈육이라는 이유로 분만 직 후 영아살해하기였다. 결론적으로, 여성 탈북자들은 남성 탈북자들보다 탈북 후체포, 감금, 고문(심신, 성적), 고문 후유증을 더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지 말고 특히, 여성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시급히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한 여성탈북자 맞춤의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핵심어: 강제북송탈북자, 고문, 중국, 난민, 성별차이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an with torture experiences among 96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7 who were forcefully repatriated by China. Istanbul Protocol(1999) were employed for this purpose. The mean number of defections was 2.45(±1.04) times. Political persecution was 49.1% for the reason of 1st and 90.6% for of 2nd defections. 100% of respondents were experienced psychophysical, sexually compounded tortures by security guards in North Korea. 100% were suffered from torture aftereffects and wanted care of the aftereffects. 100% were never heard about the words, Hunan Right when in North Korea. 100% were the reason of torture was

Received(September 10, 2018), Review Result(September 30, 2018)

Accepted(October 12, 2018), Published(November 30, 2018)

<sup>&</sup>lt;sup>1</sup>(Professor) 561-712 Dept.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 Gumam-dong, Ducgin-gu, Seoul, Korea email: victim@jbnu.ac.kr

<sup>\*</sup> 이 논문은 2017.9 - 2018.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bone in North Korea. Among women defectors the mean number of arrest was significantly 1.79 times, of interrogation 6.78 times, of tortures 14.31 times, of aftereffects of tortures 4.51 times, of number of imprisonment 2.47 times, of eye witness of public execution 1.75 times, of forceful labor in North Korea 1.68 times higher than those of man. As sexual tortures, kicking pregnant women's abdomen, inserting hands in to vagina for abortion, inserting hands into vagina and anus to remove Chinese currency, killing infants after delivery because of Chinese generations. To conclude, the results provide the international indi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hold a refugee status especially, women defectors. China should accept the defectors as political refugees rather than forcefully repatriate to North Korea.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Torture, China, Refugees, Gender differences

#### 1. 서론

인권의 무덤이라 불리는 고문[1]에 대하여 1987년도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에서 인간은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및 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또한 1945년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누리고,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3].

1954년 유엔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하며 국적 국이나 상주 국 밖에서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상단민 자격 결정기준으로서 성별 차별에 따른 침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고 유엔 난민 협약 제33조 1항에서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경우 자국으로 송환되었을 시 상당한 수준의 고문 및인권 유린에 노출될 경우 현장 난민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

이에 중국은 1995년 유엔난민기구는(UNHCR)와 특별 협정을 맺고 난민보호를 위한 사무실을 베이징에 설립한 바 있다[5].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기는 보다는 중국 공안에 의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장시간의 심문 등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는 실정이다[6]. 중국과 북한은 이들을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여 중국에서 체포되는 탈북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로 1960년 초중국과 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을 맺었고[5] 이에 따라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6]. 중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탈북자 수는 1996년 589명에서 1998년에는 6,300명으로 2000년 6월 한 달에만 15,000명에 달한다[7].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중국내에서부터 시작된 후 강제 북송되어 국경지역에 설치된 집결소에서 빈복 강화되고 다시 영구수용시설인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으로 옮겨진 후 더욱 더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다[6, 7, 8].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협약적 한계로 인해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주기에는 불가능하기에 오로지 유엔고문방지협약 1조에 근거하여 탈북자 고문 실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중국이 강제 북송하는 것을 차단할 수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제북송탈북자들의 중국내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유일한 증거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문 실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1990년 고난의 행군 이후 극한의 식량난과 빈곤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 후 중국 으로 이주하여 지난 60년 동안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대략 20만에서 40만 명에 달한 다. 2017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있는 탈북자들의 수는 대략 3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여성 탈북자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16년 현재 70% 이상이 여성 탈북자들이다[7]. 1차 탈북의 경우 여성 탈북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주된 이유는 고난의 행군 후 장사 등 생업을 위해 여성들이 생활 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0]. 그러나 이러한 여성탈북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복합 성고문의 대상자가 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11]. 성고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후유장애를 남겨 주어 피해자의 정체성 과 미래의 삶을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속성이 있다. 밀폐된 공1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증거는 인멸 되는 고문은 범세계적으로 인권보다도 선행되어 수호되어야 생명권 침해 행위인 것이다. 정복자가 특권으로 사용하는 대량 무기로 간주되고 이러한 무기는 여성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치명적으 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사회적 불명예로 간주되어 피해 당사자는 종종 평생 동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11]. 이러한 고문이 가져다주는 후유장애실태를 반영하 듯 유엔고문방지협약 14번 조항, 1번 항목에는 각 국가 정당은 법체계 속에서 고문피해자들이 시 정을 받고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방법들을 포함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9].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제 북송탈북여성의 복합(성)고문 및 고문후유장애실태와 고문후유증 치료 요구를 조사하여 탈북여성 특화 의료복지정책 수반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처럼 탈북자를 단순월경자가 아닌 난민으로 보호할 수 있는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5, 6, 9, 12]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탈북자에 관한 연구는 경제활동, 가족, 심신 건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한국 내 적응과정에서의 인권문제나 중국으로 월경한 여성 탈북자들의 사적인 이유로 인신매매, 성폭력, 장애 중국인 남편과그 가족들에 의한 가정폭력 경험 등 사적 인권침해실태 연구[13, 14, 15, 16]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뿐으로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필요충분조건인 공권력 즉, 공안, 경찰, 보위부직원 등에 의한 고문 등 비인간적 처우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탈북자 대다수를차지하는 여성들이 중국에서 강제북송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권력에 의한 고문에 관한 검증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6, 8, 9] 이를 남성 탈북자들의 것과 비교 연구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강제북송탈북자들의 고문경험 정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다.

요약하지면, 본 연구 첫 번째 목적은 강제북송여성탈북자들의 중국에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공권력에 의한 고문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이 난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재한 여성탈북(성)고문피해자들에게 최적화된 의료복지정 책 수반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8 HSST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재한 탈북자 96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하였다. 고문조사표는 신체적 고문 25종, 심리적 고문 37종으로 성고문(복합고문) 20문항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조사표는 1966-1999년 8월까지 15개국에서 각출된 75명의 법의학자, 의사, 심리사, 변호사, 인권전문위원 등이 수차례 수정보완 검증과정을 거쳐 1999년 8월 9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에 관한 효과적인조사 및 기록을 위한 지침서(이스탄불 프로토콜, The Istanbul Protoco, 1999)'[17]를 저자가 번역출판한 '고문: 인권의 무덤(한계례 출판사, 2004)'에 실린 고문 및 고문 후유증조사표 (69-71p)를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징

연구대상자들의 100%가 고문피해자였으며 북송 평균 2.45(±1.04)회였다. 성별은 여자가 69.8%, 연령은 40대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노동자가 44.8%이었다. 중고등학교 졸업자 60.1%였으며 대학졸업자도 21.0%이었다. 직업은 노동자가 44.8%, 무직 13.8%였고, 탈북당시 거주지는 함경 북도 거주자 73.0%로 가장 많았다. 탈북횟수는 2-2.9회 60.1%, 1차 탈북 동기는 정치적 탄압 49.1%, 2차 탈북 동기는 정치적 탄압 90.6%이었다. 가해자는 북한보위부원 79.8%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cefully repatriated by China (N=9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b>N(%)</b> 96(100.0)	
Туре	Victims of torture		
Gender	Women	67(69.8)	
	Man	29(30.2)	
	30	27(23.2)	
Age	40	43(36.1)	
Occupation	Laborer	53(44.8)	
	Jobless	16(13.8)	
Education	None	9(9.1)	
	Middle/High school graduation	58(60.1)	
	University graduation	29(21.0)	
Residency in North Korea	Hamyoungbukdo	81(73.0)	
	Hamyoungnamdo	15(12.6)	
Total Number of defections	1-1.9 time	29(33.0)	
	2-2.9 times	61(60.1)	

	More than 3 times	6(6.9)
Motivation for 1st defection	Political persecution	25(49.1)
	Economic crisis	51(41.7)
Motivation for 2st defection	Political persecution	87(90.6)
	Economic crisis	9(9.4)
Torture perpetuator	North Korea security guard	77(79.8)

Missing cases eliminated

#### 3.2 연구대상자들의 인권침해 특징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권침해는 100%에서 체포, 구금, 심문, 고문, 고문후유증, 공개처형목격 38.7%, 강제노동 42.9% 그리고 고문후유증치료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100%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고문 중 신체적 고문 100%, 심리적 고문 100%, 성(복합고문)고문 56.2%이었으며 세분화 고문후유증으로 신체후유증 81.2%, 심리적 후유증 100%, 사회경제적 후유증 86.9%이었으며 100%에서 심신 및 사회경제적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공개총살목격 47.9%, 강제노동 경험 53.1%이었다[표 2].

[표 2] 강제북송탈북자들의 고문실태 특징 [Table 2] Experienced tortur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cefully repatriated by China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Arrest in China		96(100.0)
Imprisonment		96(100.)
Interrogation		96(100.0)
Torture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compounded)	96(100.0) 96(100.0) 54(56.2)
Aftereffects of torture	Physical Psychological Socioeconomic	78(81.2.) 96(100.0) 83(86.9.)
Wanted care for aftereffects of torture	Physical Psychological Socioeconomic	96(100.0) 96(100.0.) 96(100.0)
Eye witness of public execution		46(47.9)
Forced labor		51(53.1)
Human rights	Never heard	96(100%)

#### 3.3 강제북송탈북자들의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정도의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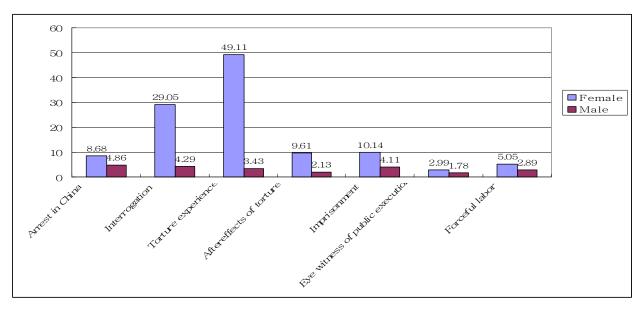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관련 변수들의 차이검증을 해 본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북송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한 차이로 체포(t=-2.976, p<0.05) 1.79배, 심문(t=-2.202, p<0.05) 6.78배, 고문(t=-10.237 p<0.001) 14.31배, 고문후유증(t=-5.031, p<0.001), 4.51배, 구금(t=-3.993, p<0.01) 2.47배, 공개처형묵격 (t=-2.755, p<0.05) 1.75배, 강제노동 (t=-3.770, p<0.01) 1.68배, 고문후유증치료소원(t=-6.770, p<0.000) 5.09배 경험하였다.[표 3][그림 1].

[표 3] 강제북송탈북자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정도의 차이

[Table 3] Comparison between women defectors and man North Korean defectors forcefully repatriated by China (N=96)

	Female			Male	4
	n(67)	$M \pm SD$	n(29)	M±SD	t value
Arrest in China	67	8.68±5.371	29	4.86±2.008	-2.976*
Interrogation	67	29.05±9.445	29	4.29±3.339	-2.202*
Torture experience	67	48.11±2.177	29	3.43±1.714	-10.237***
Aftereffects of torture	67	$9.61 \pm 4.405$	29	2.13±1.781	-5.031***
Imprisonment	53	10.14±2.202	21	4.11±3.675	-3.993**
Eye witness of public execution	35	2.99±1.214	24	$1.78 \pm 1.005$	-2.755*
Forceful labor	38	5.05±3.112	9	$2.89\pm2.002$	-3.770**

Note, M=Mean, SD=Standard Deviation All testes two-tailed, \* p<.05, \*\* p<.01, \*\*\* p<.001



[그림 1] 강제북송탈북자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정도의 차이

[Figure 1] Comparison between female and male North Korean defectors forcefully repatriated by China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강제북송탈북자들이 100%에서 고문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서방세계의 경우에는 난민 중 70%이상이 가혹한 고문을 경험하였다는 보고[11, 18, 19, 20]보다는 상당히 높은 결과이었다. 재한 탈북자 연구대상자의 100% 고문피해자[5]였으며 100%가고문후유증을 갖고 있었다는 연구결과[8,9,10]와는 일치하였고 탈북과정에서 중국 국경 지역에설치된 집결소에서부터 장시간의 구금, 심문, 고문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후 영구수용시설인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으로 옮겨진 후 더욱 강도 높은 고문을 받는 다는 연구결과[5]와는 일치한 결과이었다. 반면, 비북송 탈북자 혼합연구대상자에서는 64.7%가 고문을 경험하였으며 52.1%가 고문후유증을 경험하였다는[5]는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비북송탈북자를 제외한 강제북송탈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 전원이 강제북송경험자였으며 대다수가 여성들로서 성 고문이 추가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국체포 직후 월경 범법자로 분류된 탈북자들은 중국공안에의해 일차 인권침해를 경험하였고 북송 후에는 최근 강화된 북한 당국의 탈북자를 처벌할 수 있는법적 근거[5, 12]에 따라 구금, 조사, 고문, 고문후유증 및 치료필요성, 공개처형목격, 강제노동의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북송탈북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한 차이로 체포, 구금, 고문, 고문 후유증, 고문 후유증치료필요성, 공개처형묵격, 강제노동을 더 경험하였다는 것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제북송관련 남성탈북자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직접 비교논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제북송 여성탈북자들이 경험한 가혹행위를 국제고문피해자재활센터(IRCT)에서 제시한 고문목록인 신체적고문 25종, 심리적 고문 37종으로 성고문(복합고문) 20문항 총 82문항[17]을 비교해 본 바 79문항 (90.9%)에서 그 내용이 일치하였다. 고문종류별로 보면, 신체적 고문목록과는 77.7%, 심리적 고문목과는 90.5%, 성 고문은 99.7% 일치하였으며 목록 외로 신체적, 심리적 고문 경험으로는 강제노동하기, 공개총살목격하기가 있었다. 목록 외 심신 성고문으로는 임신한 배 걷어차기, 질에 손 넣어 낙태시키기. 질에 손 넣어 중국화 빼내기, 항문에 손 넣어 중국화 빼내기, 분만 직후 중국 씨라는 이유로 분만 후 영아살해하기 또는 목격하기 등이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아직 IRCT 등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타민족들 간의 전시 또는 일제 식민통치하의 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의 성적 고문실태[20, 21, 22, 23]와 매유 유사한 것으로 결코 인류사회가 묵인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공안에 의한 고문가해가 36.6%로 밝혀졌는데 이는 북송 전 중국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2]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전시 하에서 여성은성 고문 및 다양한 정치폭력의 희생물이 되어왔다[11, 21]. 여성의 몸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지배국의 여성을 제도적으로 강간한다는 것은 정복자에게는 곧 그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8 HSST

며 더 나아가서는 지배국의 종을 희석함으로써 피 지배국의 인종을 말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24].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강제북송 직전 탈북 여성들은 전시하의 여성들과 다를바 없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고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상부의 지시에 따르거나 자의에 의해 당사자 또는 제 3자로부터 강제로 정보를 얻기 위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하거나, 또는 그 어떤 이유로 인해 의도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4] 있으며 고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후유장애를 남겨 주어 피해자의 정체성과 미래의 삶을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증거는 인멸되는 고문은 범세계적으로 인권보다도 선행되어 수호되어야 생명권 침해 행위인 것이다. 특히, 성고문은 정복자가 특권으로 사용하는 대량 무기로 간주되고 이러한 무기는 여성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을 치명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사회적 불명예로 간주되어 피해 당사자는 종종 평생 동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24, 25, 26, 27, 28, 29, 30]. 이러한 고문이가져다주는 후유장애실태를 반영하듯 유엔고문방지협약 14번 조항, 1번 항목에는 "각 국가 정당은법체계 속에서 고문피해자들이 시정을 받고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하기 위한 방법들을 포함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24]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이 탈북여성들을 난민으로 받아주기에는 중국내 법적 한계가 있다[5, 12] 그러나 유엔고문방지협약 1조에 근거하게 되면 강제북송을 차단할 수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다[4]. 이에 본 연구의 강제북송탈북자 특히, 강제북송탈북여성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검증적실태조사 결과는 이들이 난민지위로 중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고문이란 정치적 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체포 및 구금되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가혹 행위이라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여실히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북송탈북자들이 특히, 여성들이 중국내 법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공권력에 의한 정치적 난민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고문 등 모든 변수에서 남성 탈북자들 보다 고강도의 인권유린을 당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에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중국이 탈북자들을, 특히 여성을 단순 월경자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임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국내 탈북자 의료서비스 및 재활사업 시행 시 탈북 여성 특히 성고문 특성화 의료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도 마련하였다. 추후 중국 외 지역 강제북송 탈북자들의 고문 등 인권침해 실태

도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 감사문

본 연구에 참여한 준 탈북자들, 탈북단체 임원들, 그리고 2017(9.1) - 2018(8.3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에 이에 감사 글을 남긴다.

#### References

- [1] KRCT, Editor, Torture: as the Graves of Human Rights, Hangyorae Book Press, Seoul (2004).
- [2]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G. A. Res. 39/46,39 GAOR Supp.(No.51) at 197, U. N. Doc. A/39/51, opened for signature February 4, 1985, entered into force, June 26 (1987).
- [3] Human Rights Declaratio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UNTS) (1945).
- [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UNTS) (1954), Vol. 189.
- [5] B. R. Kim,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cefully repatriated, J. of International Laws (2018), Vol. 5, No 1(1), pp.3-39.
- [6] J. N. Byun, The Unhealed Wound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fference in the degree of human rights violation between repatriated and non-repatriated defectors forcefully from China. Asia-pacific J.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 Vol. 8, No. 8, pp.191-201.
- [7]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7).
- [8] J. N. Byun, Y. T. Kim, N. O. Jung, and Y. K. Yoo, The torture stori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d in South Korea. J. of Koreans Abroad. (2006), Vol. 16, pp. 81-109.
- [9] J. N. Byun, N. O. Jung and Y. K. Yoo, The aftereffects of torture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d in South Korea. The Korean J. of Stress Studies, (2006), Vol. 14, No.1, pp. 33-40.
- [10] D. W. Gang, Case study on motivation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China: why they defect to China from North Korea, J. of unification institute, (2018), Vol. 30, No.1, pp. 171-214.
- [11] L. T. Arcel, Sexual Torture of Women as a Weapon of War-The Case of Bosnia Health Problem List. In War violence, trauma, and the coping process. Edited M. Basoglu,, Torture and Its Consequences: Current treatment Approach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1988), pp. 182-225.
- [12] K. C. Le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Torture prevention, International Laws, (2018). Vol. 51, No. 1, pp.3-39.
- [13] J. R. Park and D. W. Gang, A Study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rends, Controversial Issues, and Tasks.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011), Vol.15, No.2, pp.1-24.

- [14] J. W. Min Choi,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must say now] 'Gender persecution' of North Korean women. The Voice of People. (2004), pp. 121-142.
- [15] H. S. Park, Problem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Korean Association for Broad & Telecommunication Seminars and Reports (2002), pp. 79-87.
- [16] J. R. Park, Research trend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pporting programs, IOM, J. of Immigration research institute, (2010), Vol.12.
- [17] The Istanbul Protocol, Edited KRCT, In Torture: as the Graves of Human Rights (2004), Seoul: Hangyrea Book Press, Seoul (69-72p).
- [18] R. J. Daly,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of victim's of torture. An example of preventive psychiatry. Danish Medical Bulletin (1980), Vol.27, pp.245-248.
- [19] G. Skylv, The physical sequel of torture. Edited M. Basoglu, Torture and Its Consequences: Current treatment Approach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1988), pp.345-390.
- [20] F. Somnier, P. Vesti, M. Kastru and I. K. Genefke, Psycho-social consequences of torture: Current knowledge and evidence. Edited M. Basoglu, Torture and Its Consequences: Current treatment Approach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1988), pp. 51-71.
- [21]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estimonials: Choson's Comfort Women Taken by Force 3, (1999), Hanwool Publishing House, Seoul.
- [22]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2001).
- [23] J. N. Byun, The Unhealed Wounds of Japanese Colonization: After-effects of Torture and Other Cruel Treatment on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during the World War II, J. of Stress Research (2003), Vol. 11, No.1, pp.1-16.
- [24] Convention against Torture, United Nations General Committee, (1997), No.1.
- [25] O. V. Rasmussen, Medical aspects of torture. Danish Medical Bulletin (1990), Vol.37, pp.1-88.
- [26] R. J. Daly,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of victim's of torture. An example of preventive psychiatry. Danish Medical Bulletin (1980), Vol.27, pp.245-248.
- [27] K. Prip, L. Tived, N. Holten Editor, Physiotherapy for Torture Survivors: a Basic Information. Copenhagen: IRCT (1995).
- [28] L. Jacobsen and K. Smidt-Nielsen, Editor, Torture Survivors: Trauma and Rehabilitation. IRCT, Copenhagen (1997).
- [29] L Lunde, and J. Ortmann, Prevalence and sequela of sexual torture. Lancet, (1990) Vol 336, No.2, pp.89-291.
- [30] R. F. Mollica, The Harvard Trauma Questionnaire. Edited M. Basoglu, Torture and Its Consequences: Current Treatment Approach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1992), pp.23-37.

